

2020년 7월 2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축산정책과 과 장 박정훈(044-201-2311), 사무관 문원탁(2317)

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정경석(044-201-2351), 사무관 정창남(2357) 제공일: 7월 23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축산악취 관리 농가(1,070호), 1차 점검결과

- 악취관리 등 미흡사항 507건 확인 개선될 때 까지 지속 점검·관리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정한 축산악취 관리 농가 1,070곳 대상으로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상황 등 1차 점검 결과, 507건의 미흡사례 확인
 - 주요 미흡사항은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미흡, 전기화재 및 질식 사고 등 안전관리 미흡, 축사 청소 미흡 및 사육밀도 등 준수위반 위반 소독·방역관리 미흡, 폐사체 관리 미흡, 가축분뇨 유출 등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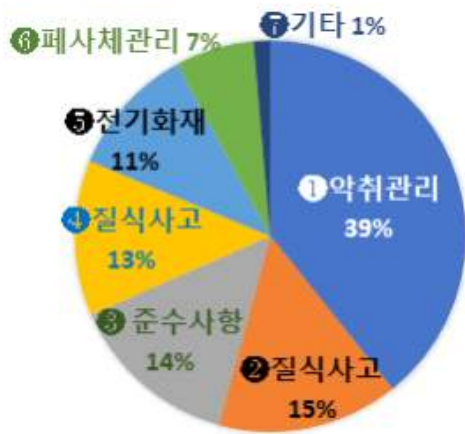
	사유	건수(비중)
①	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축산악취 관리 미흡	199 (39.3%)
②	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	76 (15.0%)
③	축사주변 청소 미흡,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위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	72 (14.2%)
④	신발소독조·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·방역 관리 미흡	65 (12.8%)
⑤	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	55 (10.9%)
⑥	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	33 (6.5%)
⑦	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	7 (1.3%)

- 농식품부는 농가별 위반사항 및 개선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마련,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을 부여하고, 조치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
- 향후,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산법, 가축분뇨법 등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, 준수 여부를 점검·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 제공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,070곳*을 대상으로 5.18.~7.10. 까지 축산악취, 가축분뇨처리,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,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
* 축산악취농가(1,070) 현황 : 돼지 947곳, 가금 81곳, 한육우 23곳, 젃소 19곳

○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



- ① 약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약취 관리 미흡 199건(39.3%)
- ②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(15.0%)
- ③ 축사주변 청소 미흡,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(14.2%)
- ④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(12.8%)
- ⑤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(10.9%)
- ⑥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(6.5%)
- ⑦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건(1.3%)

○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.

유형	주요 위반사례	
① 약취관리 미흡		○ A농가는 돈사(슬러리피트)내 분뇨 장기간 적치하여 냄새 심각 ○ B농가, 약취저감시설 미비 (차광막, 안개분무시설 등), 액비 저장조 등 밀폐 안 되어 냄새 지속 발생
② 질식사고 예방미흡		○ H농가는 액비저장조 등 밀폐공간에 위험 안내스티커 미부착,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
③ 준수사항 위반		○ C농가는 허가면적 1,011㎡에서 한우 153두 사육, 적정 사육면적 1,273㎡ 대비 사육 밀도 27% 초과 ○ D농가는 축사 내부 청소가 불량하고, 약취가 심각
④ 소독·방역 관리미흡		○ E농가는 농장 입구에 차량소독조 미설치, 울타리 미설치,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등 소독·방역 수칙 준수 위반
⑤ 전기화재 관리미흡		○ G농가는 시설노후화, 전선 외부 노출, 콘센트 주변 먼지·거미줄 미제거, 소화기 미비치 등 전기안전 관리 미흡
⑥ 폐사체 관리미흡		○ F농가는 퇴비사 내부에서 폐사체 처리 등 폐사체 관리 미흡
⑦ 기타		○ J농가는 농장주 관리 부주의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입

□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(즉시~3개월)을 부여하고,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,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
* (즉시 조치) 신발소독조 미구비·소독기록부 미비치 등, (1개월) 출입통제 안내판, 차량진입 차단바 미설치 등, (3개월범위내 설치기간 고려) 울타리 설치 및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

-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.
- 또한,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,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,
 - 새로이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악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- 한편, 가축분뇨 무단방출,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, 고발 등 조치도 이루어졌다.

<주요 과태료 부과, 고발 조치 사례>

위반사례	처분 내역
◆ 00농가는 퇴비사에 있는 가축분뇨 관리 미흡으로 빗물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출	▶ 가축분뇨법에 의거 고발 조치
◆ 00농가는 악취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(기준치 30배 초과)하여 개선 명령했으나, 미 이행	▶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1개월(20.9.7~10.6)
◆ 00농가는 축산업 변경신고 없이 장기간 휴업, 축사 방치	▶ 축산법에 따른 변경신고(휴업)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
◆ 00농가는 2개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적정사육밀도 기준 초과를 숨기기 위해 휴업중인 농장명의로 돼지 출하 현황 허위 신고	▶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변경 신고(휴업) 누락, 과태료 부과 ▶ 축산물이력제법에 따라 이력제 거짓 신고로 과태료 부과

□ 또한,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질식사고 예방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돈협회 등과 협조하여 예방조치와 함께 현장 계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.

- 우선,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농협·한돈협회를 통해 농가에 전기화재 예방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여 스스로 전기안전 상태를 점검하고



- 축산관련 종사자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 시 전기화재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전기 화재점검을 지원하고 있다.

- 유독가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협회 차원에서 안내스티커(11천부)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포, 안전기준 준수 등 질식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.



□ 또한,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(축산법, 가전법, 가축분뇨법 등)상의 악취 관리, 사육밀도 등 다양한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통합 자가진단표를 제공한다.

< 축산농장 통합 자가진단표 구성 체계도(한우 예시) >

범주	자가진단항목
축산업 영업 (5개 항목)	①축산업 허가등록 여부, ②신고없이 1년 이상 가축 미사육 여부, ③휴업 등 발생 시 3개월 이내 신고 여부, ④지위승계 신고 여부, ⑤축산종사자교육 이수 여부
사육시설 (5개 항목)	①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, ②사육시설 설치 여부, ③배출시설 인허가 여부, ④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 여부, ⑤배출시설 이외에서 가축사육 여부
소독설비 (4개 항목)	①차량 소독조 등 설치 여부, ②출입자 소독시설 설치 여부, ③전용 의복·신발 등 비치 여부, ④신발소독조 등 설치 여부
방역시설 (5개 항목)	①출입기록부 비치 여부, ②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여부, ③차단바 설치 여부, ④출입 통제안내판 설치 여부, ⑤울타리 설치 여부
농가준수사항 (5개 항목)	①허가된 동물용 (의)약품 사용 여부, ②동물용 (의)약품 사용기준 준수 여부, ③제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, ④동물용 (의)약품 사용내역 기록 여부, ⑤휴약기간 준수 여부
이력·위생관리 (3개 항목)	①농장식별번호 발급 여부, ② 출생·폐사, 가축이동시 5일 이내 신고 여부, ③출하전 절식 준수 여부
악취 관련 (3개 항목)	①밀폐시설 설치 여부, ②악취 예방 조치 여부, ③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

※ 자가진단표에서 제시하는 진단항목은 가장 기본적인 주요 준수사항으로 이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함

-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‘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’라고 강조하면서,
 - 이번 점검결과로 볼 때, ‘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,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,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, 농가 스스로 축산관련 법령(축산법, 가전법, 가축분뇨법 등)상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’ 당부하고,
 - 농식품부에서도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, 농가들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고,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